

環境民事責任*

崔光漕**

I. 環境民事責任과 問題點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그 영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미칠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오염물질의 증가로 인하여 극히 적은 양의 오염물질의 방출에 의해서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극심한 피해를 생태계에 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결국 『環境權의 保障』이라는 헌법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방지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법적인 측면에서 '환경오염'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여 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으나, 환경침해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民事責任의 法理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環境民事責任에 있어서는—환경 자체가 아니라—피해자의 물건, 생명이나 신체 등 개별적인 법익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인 과제로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가해자에게 民事責任을 물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환경의 보호와 더 나아가서는 환경권의 보장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효율

* 본 연구를 위해 독일 환경법에 관한 상세한 소개와 자상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미하엘 클뢰퍼 (Michael Kloepfer)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잠재적 가해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그만큼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환경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環境民事責任의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할 터인데, 현행 민사법상으로는 법적 안정을 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환경침해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民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因果關係나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 기술이 결여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는 현대의 기술적 수준으로도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있다. 판례상으로는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이 책임을 완화하거나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사실상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상으로도 그 적용요건이 불명확함으로 해서 법적 안정을 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環境政策基本法과 같이 無過失責任을 기초로 하는 입법이 단행되기도 했지만, 民事責任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동법 제31조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이나 요건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기 때문에, 결국 環境民事責任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¹⁾

한편 環境民事責任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環境責任法(Umwelthaftungsrecht)에 주목하게 된다. 獨逸環境責任法²⁾은 無過失의 危險責任을 기초로 하면서 가해행위와 손해

1) 同旨 尹庸碩, 環境汚染의 民事責任에 관한 새로운 動向, 財產法研究 第11권(1994) 1호, 61면

2) 이하 ‘環境責任法’으로 한다.

와의 사이의 因果關係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만큼 여러 가지의 면책사유를 인정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

이 環境責任法은 民事責任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環境民事責任에 관한 유일한 일반규정인 環境정책기본법 제31조의 적절한 해석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³⁾, 현행법의 실정상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環境民事責任法의 입법에 더욱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環境責任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비교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獨逸 環境責任法

1980년대에 들어와 환경오염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부터 독일의 정치권에서는 危險責任을 중심으로 하는 環境民事責任法의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헤센(Hessen)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州가 獨逸 聯邦參議院(Bundesrat)에 州立法案을 제시한 데 이어, 聯邦政府도 독자적으로 環境民事責任法에 관한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 초안은 다소 수정되어 1990년 12월 10일에 공포되기에 이른다.

독일연방정부는 環境責任法에 대한 입법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첫째, 賠償의 目的 (Ausgleichszweck). 環境責任法은 보호법익의 개별적인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責任法의 立法이 공통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점이다. 배상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는 環境責任法에

3) 尹庸碩, 前掲論文, 62면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豫防의 目的 (Präventivzweck). 環境責任法이 결국 환경손해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견해다. 여기서는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예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잠재적 가해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발생가능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⁴⁾

셋째, 소위 效率促進의 目的 (Effizienzförderungszweck). 엄격한 환경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 제조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은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로 하여금 값싼-환경친화적인-제조공정이나 제품의 생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무분별한 환경오염적 생산을 방지함으로써, 모자라는 생태계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소비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適用範圍

環境責任法은 無過失責任이 기초되는 危險責任을 중심으로 하여 環境作用(Umwelteinwirkung)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環境責任法 제3조 (1)⁵⁾ 環境作用이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되는 물질, 진동, 냄새,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및 그 외의 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동법 제1조 (1)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Anlage)로부터 유발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⁶⁾

4) 그러나 責任法이 예방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독일학계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예방의 목적을 부정하는 대표적 견해로는 Esser/Schmidt, Schuldrecht Allgemeiner Teil(1984), § 3 II. 일반적으로는 보충적으로나마 예방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MünchKomm/Mertens, vor § 823 Rn. 41, 44 참조. 危險責任을 중심으로 하는 環境責任法에 있어서도 이 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상세한 것은 Klopfer/Brandner, Umweltrecht(1998), 2. Aufl., S. 404 참조.

5) 環境責任法 제3조 (1) :

6) 따라서 환경책임법상의 책임은 '制限된 施設責任(beschränkte Anlagenhaftung)'으로도 일반적으로 일컬어진다.

環境責任法の 입법과정에 있어서는 水管理法(Wasserhaushaltsgesetz) 제22조와 같이 '행위책임'을 내용으로 할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環境責任法은 상당히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행위책임'을 인정할 경우, 그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짐으로써,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기가 곤란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⁸⁾ 입법과정에서 고려된 점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함께 현행법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環境責任法の 적용은 다른 법률규정에 근거한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環境責任法 제18조 (1) 따라서 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되는데, 그 실익은 環境責任法에서는 근거규정을 존재하지 않는 위자료의 청구에서 찾을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 시설보유자에 대해 환경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環境責任法은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環境責任法 제23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때가 아니라, 그 손해의 발생을 유발한 때, 즉 環境作用의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⁹⁾ 環境責任法은 이렇듯 環境作用에 의해 유발되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不可抗力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環境責任法이 적용되지 않는다, 環境責任法 제4조. 판례¹⁰⁾는 일반적으로 '不可抗力'을 시설의 조업과

7) 獨逸 綠色黨 (Die GRÜNEN)의 제안내용에 관해서는 BT-Drs. 11/4247 참조.

8) 독일연방정부의 제한적 입장에 대해서는 BT-Drs. 11/7104 참조.

9)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環境責任法の 적용이 없다면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에 따라 문제의 해결을 피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環境責任法の 적용대상을 손해의 발생이 아직 없는 그러나 이미 環境作用을 유발한 사건에 대해서 까지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의 環境責任法상의 청구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10) BGHZ 62, 351, 354; BGH, NJW 1990, 572. 그러나 시설물보유자에게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위험 제거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Schmidt-Salzer, Kommentar zum Umwelthaftungsrecht(1992), § 4 Rn. 15 참조.

전혀 무관하고,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며, 상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경우로 이해한다.

2. 危險責任의 構成要件

1) 施設責任

環境作用에 의한 손해는 시설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 어느 시설로부터 環境作用이 일어나, 생명이나 신체, 건강에 손상을 주거나, 재산에 침해가 있으면, 이 시설의 보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조업이 정지된 상태라도 상관없다, 環境責任法 제2조. 시설보유자가 危險責任을 저야 하는 근거는-자기의 시설을 조업 또는 가동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이 시설 자체에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危險潛在性(Gefahrenpotential)은 준공 중이거나 조업이 정지된 시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環境責任法은 또한 통일적인 일반적 규정¹¹⁾을 포기하고, 해당되는 시설의 종류를 부칙 I에서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列舉主義).¹²⁾ 주의할 것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장소이동이 가능한 기계나 부속설비도-이것이 시설 또는 그 일부와 장소적·조업기술적 관련이 있어-環境作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環境責任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環境責任法 제3조 (3) 이렇듯 열거된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한적 태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형평의 원

11) 이는 獨逸 社民黨(SPD)과 獨逸聯邦參議院(Bundesrat)의 제안내용이었다, BT-Drs. 11/7881 및 BT-Drs. 11/8134 참조.

12) 여기서 열거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環境責任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거된 시설과 동등한 위험성이 잠재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이것이 열거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한-環境責任法의 적용은 없다. 類推適用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Klopfer/Brandner, 前掲書, S. 406 참조.

칙'에 따라 시설보유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규정이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반면에, 그 책임에 대한 요건을 列舉主義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보유자가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環境危險責任은 또한 環境作用(Umwelteinwirkung)¹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로부터 손해가 야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본법의 적용이 없다. 연방임및시온법이 環境作用의 危害性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環境責任法은 環境作用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環境作用에 의해 발생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라는 결과가 책임의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시설이 물질, 진동, 소음, 압력, 방사, 가스, 증기, 열 또는 그 외의 현상에 의해서 地中, 空中 혹은 水中 등 환경매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호법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環境責任法 제3조 (1) 따라서 환경매체에 대한 적극적 침해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環境責任法이 적용될 여지가 사라진다.¹⁵⁾ 環境作用은 또한 손해발생에 대해 간접적 요인이어서는 안된다. 環境責任法 제1조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環境作用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되었어야 한다.¹⁶⁾

13) Geisendorfer, Das Zivilrecht als Instrument der Umweltpolitik, VersR 1989, 433 ff., 435. 하지만 列舉主義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그 외 환경위해적인 물질을 다루거나, 가공 및 생산하는 시설』이라는 식의 다소 포괄적 규정을 두면서도 시설보유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형식의 입법을 주장하는 견해가 더욱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이 견해에 관해서는 Hager, Umwelthaftung, in: H.-J. Koch(Hrsg.), Auf dem Weg zum Umweltgesetzbuch(1992), S. 125 ff., 131; Kloepfer/Brandner, 前掲書, S. 406-407 참조.

14) 여기서의 環境作用의 개념은 연방 임및시온법 제3조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5) 그렇기 때문에 작동중인 기계에 물려 들어가거나, 환경위해적 물질이 들어 있는 용기에 빠지거나 또는 물질적 결합으로 느슨해진 기계부품이 떨어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環境責任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Kloepfer/Brandner, 前掲書, S. 407.

16) 이 점은 獨逸 水管理法 제22조 (2)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쓰레기처리업자의 불충분한 처리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쓰레기를 배출하여 업자에게 넘겨준 쓰레기 배출자는 환경책임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Hager,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NJW 1991, 134 ff., 135 참조.

하지만 環境作用에 의해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손해는 구체적으로 특정 보호법익에 대해서 발생해야 한다. 환경책임법상의 보호법익은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獨民 제823조 (1)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호법익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환경' 자체는 보호법익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적 손해 (ökologischer Schaden), 즉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 자체는 -이것이 구체적 보호법익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에 결부되지 않는 한- 環境責任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¹⁷⁾

環境責任法은 행정법상의 법률규정에 적합한 정상조업(Normalbetrieb)의 경우에도 적용된다.¹⁸⁾ 이는 危險原(Gefahrenquelle)을 창조하고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危險責任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¹⁹⁾ 정상조업중인 시설이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되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危險原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結果責任(Erfolgshaftung)의 법리에 따라 그 危險原으로부터 위험이 실현되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합법적인 정상조업인가 또는 불법적인 비정상조업인가의 문제가 위험원의 판단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없는 만큼,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과연 危險原인 시설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오염물질이 방출된 당시의 학문적·기술적 수준으로는 오염물질의 존재를 밝힐 수 없었던 소위 開發危險(Entwicklungsrisiko)의 경우도 환경책임

17) 이러한 제한적 입장에 대해서는 '環境保護의 理念의 實現'이라는 목표를 두고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으나, 環境責任法이 民事責任의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한 제한으로 생각된다. '자연환경의 보호' 자체가 民事責任法의 임무가 될 수는 없다. 民事責任法은 개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능을 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民事責任法은 개별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매체에 대한 보호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18) Landsberg/Lüllig, Umwelthaftungsrecht(1991), § 1 Rn. 333; Schmidt-Salzer, Kommentar zum Umwelthaftungsrecht(1992), § 1 Rn. 31 ff.; Paschke, Kommentar zum Umwelthaftungsgesetz(1993), § 1 Rn. 46 f.

19) Klopfer/Brandner, 前掲書, S. 408

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입법자는 피해자의 구제를 확고히 하고자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위험을 발견할 수 없었던 開發危險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침해적 결과의 제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소위 開發缺陷(Entwicklungslücke)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게 된다.²⁰⁾ 이렇듯 環境責任法은 그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각 시설보유자들의 지속적인 환경오염측정 및 시설안전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의 규율대상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오염사건 뿐만이 아니라, 환경작용 후 오랜 시간적 경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소위 점진적 손해(Allmählichkeitsschaden)도 포함된다.

2) 因果關係

環境民事責任에 있어 因果關係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침해는 전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최신기술과 학문수준으로도 명확하게 그 발생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의 因果關係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因果關係의 입증책임을 지운다면 결국 환경침해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環境責任法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손해의 발생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1) 因果關係의 推定

環境責任法의 근간을 이루는 危險責任은 원칙적으로 因果關係에 대한 입증을 요건으로 한다. 環境責任法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그 입

20) Kloepfer/Brandner, 前掲書, S. 409

증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環境責任法 제6조 (1)에서는 문제되는 시설이 특정의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 손해가 이 시설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추정된다.²¹⁾ 因果關係의 입증에 있어 추정에 의존하는 것은 독일법상으로도 생소한 것이지만, 이는 환경문제에 관한 독일 판례²²⁾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環境責任法 제6조 (1)에 의한 추정의 효력은 獨民 제249조 이하에서 의미하는 재산적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시되는 責任充足的 因果關係(haftungsausfüllende Kausalität)에 까지 미치지 않지만, 責任發生的 因果關係(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의 요건을 충족한다.²³⁾

環境責任法 제6조 (1)의 추정은 하지만 전제요건으로서 피해자가 손해발생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을 적시하고(darlegen) 필요한 경우에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시설이 특정의 손해의 발생에 적합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추상적으로 因果關係의 가능성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²⁴⁾

따라서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문제되는 시설이 특정의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²⁵⁾

21) 危險責任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推定規定(Vermutungsregel)이 아니라, 입증의 방법이 완화된 立證規定(Beweisregel)으로 보는 것이 옳다, Paschke, 前掲書, § 6 Rn. 2.

22) 이들 판례의 소개에 관해서는 Steffen, Verschuldenshaftung und Gefährdungshaftung für Umweltschäden, NJW 1990, 1817 ff. 참조.

23) 따라서 因果關係의 推定(Ursachenvermutung)이 사실상 責任의 推定(Haftungsvermutung)과 결국 동일시되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다, Deutsch, Umwelthaftung: Theorie und Grundsätze, JZ 1991, 1097 ff., 1100.

24) 피해자를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발생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 의무마저 포기한다면, 결국 단지 嫌疑(Verdacht)만을 근거로 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法治國家의 理念에도 위배될 위험이 존재한다, Klopfer/Brandner, 前掲書, S. 411.

25)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이 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環境責任法 제8조 및 9조에서

들제, 배출된 오염물질과 손해와의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²⁶⁾

셋째, 배출된 오염물질이 문제의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점.²⁷⁾ 이들 세가지의 사실을 피해자가 유효하게 입증하면, 시설로부터의 環境作用과 손해 사이의 因果關係의 존재가 추정된다.

因果關係推定の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環境責任法 제1조에서는 제1단계로서 시설에 의하여 일정한 環境作用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제2단계로 이 環境作用과 보호법칙의 침해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단계적인 因果關係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因果關係推定の 效力은 구체적으로는 이들 2단계의 인과관계 모두에 대해 미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을 유효하게 입증하면, 環境作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시설로부터 環境作用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추정된다.

하지만 因果關係推定の 效力은 다른 법률규정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법에 기초하여—환경책임법 상으로는 청구의 대상이 아닌—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環境責任法 제6조에 의해 獨民 제823조상의 요건인 因果關係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2) 因果關係推定の 例外

정상조업의 경우에는 因果關係의 추정이 배제된다. 정상조업은 특별한 조업의무를 준수하거나 조업장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環境責任法 제6조 (2) 공법상의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는 피해자에게 시설보유자나 행정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6) 民事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적 손해의 발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7)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環境責任法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독일의 향후 판례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요건이 명확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정이 시설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環境責任法 제6조 (2)는 조업의무를 준수한 시설보유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업의무를 준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설보유자 자신이 부담한다. 시설보유자가 이를 유효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환경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시설보유자는 관련되는 모든 행정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 문제되는 環境作用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규정상 의무를 준수했음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추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²⁸⁾ 한편 環境責任法 제6조는 '義務遵守의 推定'을 인정함으로써, 시설보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環境責任法 제6조 (4) 1호에서는 특별한 조업의무에 대한 감시규정이 있고, 시설보유자가 이에 의거하여 자체적인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조업의무의 위반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가 준수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한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이 넘어 야기된 環境作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조업의무에 대한 준수는 추정된다. 環境責任法 제6조 (4) 2호.

결국 因果關係의 추정은 시설보유자가 정상조업을 유효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의 여지가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정상조업을 입증하게 되면 시설보유자는 물건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는—그 손해의 정도가 본질적임과 동시에 장소적 관련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이상—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環境責任法 제5조.

(3) 因果關係推定の 排斥

環境責任法 제6조 (1)에 따르면 시설보유자는 자기 시설의 적합성에 상

28) Kloepler/Brandner, 前掲書, S. 411.

용하는 정도로 '다른 사정 (anderer Umstand)'이 손해발생에 대해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因果關係의 추정을 배척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環境責任法 제6조 (2)에 의한 因果關係의 추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조업의무의 준수를 유효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조업장해가 있거나, 또는 조업의무의 준수가 추정되지도 않는 경우에는 시설보유자는 '다른 사정³⁰⁾'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하다는 것만을 입증함으로써 因果關係의 추정을 유효하게 배척할 수 있다. 다만 이 '다른 사정'의 적합성의 정도는 시설물에서의 위험발생 가능성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같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정상조업의 경우에는 시설보유자를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複數의 施設과 因果關係의 推定

因果關係의 추정의 효력은 손해가 環境責任法 제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들 중 1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복수의 시설에 의해 환경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環境責任法 제7조 (1)³¹⁾을 통해서 여러개의—그 보유자를 달리하는—시설들이 손해발생에 적합한 경우에도 因果關係의 추정이 있게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각각 다른 보유자에 귀속하는 여러개의 시설들이 존재

29) 원칙적으로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92조에 따라 반대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손해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만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는 반면, 시설보유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모든 과정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음으로써 일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설보유자도 또한 '다른 사정'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하다는 점만을 입증함으로써 因果關係의 추정을 배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30) 이 '다른 사정'에는 環境責任法 제1조에 열거된 '다른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아래 (4) 『複數의 施設과 因果關係의 推定』에서 설명하는 '複數의 施設'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因果關係推定の 배척과는 무관한 문제임에 주의해야 한다.

31) 環境責任法 제7조 (1): "複數의 施設(mehrere Anlagen)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한 경우에는……"

한다고 해서, 因果關係의 추정을 배제하는 것은 環境責任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³²⁾ 이런 의미에서 손해발생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시설이 '동일한 보유자'에 귀속하는 경우라면, 여기에도 因果關係 推定의 效力이 미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³³⁾ 손해의 발생에 적합한 시설이 복수인 경우에, 그 중 한 시설의 보유가 다른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입증을 하더라도 추정의 효력은 배척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에 적합한 '다른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복수의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因果關係의 추정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環境責任法 제6조 (1)의 추정은 복수의 시설의 경우 동법 제7조 (1)에 따라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배척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개의 손해와 복수의 시설에 의한 環境作用 사이에 因果關係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결과가 된다. 이 추정의 대상에는—각각 손해에 대한 적합성이 입증되는 한—共同性, 즉 복수의 시설이 공동으로 손해의 발생에 기여했다는 점까지도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

복수의 시설이 관여하는 때에도 環境責任法 제7조 (1)의 '다른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因果關係의 추정을 배척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여러 개의 공동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특수한 문제를 야기한다. 환경오염의 특성상 손해에 대한 원인이 오직 어느 특정의 시설물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침해는 오히려 시설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이 다른 환경요인과 결부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시설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정'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이 손해발생에 적합성을 지닌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環境責任法 제7조 (1)이 별다

32) BT-Drs. 11/7104, S. 18 참조

33) Landsberg/Lüling, 前掲書, § 6 Rn. 59 a.

른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설³⁴⁾상으로는 '다른 사정'의 존재를 입증함에 있어, 시설물로부터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 라도, '다른 사정' 하나만으로도 동일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단지 시설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한 '다른 사정'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因果關係의 추정을 배척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다른 사정'에는 環境責任法 제1조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도 포함된다.³⁵⁾ 제3자의 행위나 자연환경적 변화도 '다른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³⁶⁾

3. 情報請求權

環境責任法은 정보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環境責任法 제8조.

둘째, 피해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環境責任法 제9조.

셋째,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環境責任法 제10조.

여기서 특히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을 보면, 피해자를 '立證의 困難³⁷⁾'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시설보유자의 '영업상 기밀의 유지'라는 보호법익과 서로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

34) Hager,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NJW 1991, 134 ff.; Schmidt-Salzer, 前掲書, § 7 Rn. 76.

35) Kloepfer/Brandner, 前掲書, S. 416.

36) Kloepfer/Rehbinder/Aßmann unter Mitwirkung von Kunig, Umweltgesetzbuch—Allgemeiner Teil (1991), S. 430.

37) 환경책임법상 피해자는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원칙, 즉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으나, 因果關係推定の 效力을 위해서는 최소한 손해의 발생에 시설이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입증의 곤란'이란 그만큼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손해발생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시설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정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구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정보청구를 하기 위하여 손해의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이 잠재적 가해자로서 손해의 발생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環境責任法 제8조. 이는 특정의 시설이 손해의 발생에 대해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도 가능할 것이다.

環境責任法 제8조 (1) 2문은 정보청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용된 시설에 관한 정보, 사용하거나 방출한 물질의 종류 및 농도, 그 외 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효력작용 및 環境責任法 제6조 (3)의 특별한 준수의무가 정보청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률이 이들 정보의 유출을 막고 있거나, 정보의 공개가 시설보유자나 제3자의 중대한 이익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정보청구가 제한된다.

시설보유자로부터 제시된 정보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정보의 제공이 합리적인 기간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環境責任法 제8조 (3)에 따라 시설보유자의 문서정보에 대한 閱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청구권에 대해서 정보열람권은 보충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시설보유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정보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제시 대신에 정보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

시설에 대한 인가를 내주거나 시설을 감독하는 관청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은 실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環境責任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시설은 연방임밋시온법에 의한 인가를 필요로 하며, 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주무관청에는 시설의 인가와 감독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된 - 따라서 피해자에게 유용한- 자료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관청의 정보공개는 공법상의 문제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관청에 정보공개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는다. 環境責任法 제9조 관청은 자체적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環境責任法 제9조에 의해 관청

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시설보유자에 대한 동법 제8조상의 정보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시설보유자에 대해 환경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설보유자에게도 정보청구권이 주어진다. 이는 특히 環境責任法 제6조 (1)상의 因果關係推定の 效力을 배척하기 위해서 시설보유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시설보유자의 정보청구권은 피해자나 주무관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보유자에 대해서도 그 행사가 가능하다. 시설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설보유자의 영업상의 기밀을 캐낼 목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시설보유자에 대한 정보청구에 있어서는 그 요건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1994년 부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環境情報法(Umweltinformationsgesetz)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³⁸⁾

4. 損害賠償의 範圍

1) 一般原則과 生態界的 侵害(Ökologischer Schaden)

독일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에 있어 原狀回復主義를 취한다, 獨民 제249조 금전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³⁹⁾ 環境責任法은 이러한 독일 민법상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獨民 제249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물건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는데, 相隣關係에 적용되는 법리와 유사하게 정상조업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침해가 본질적이면서 장소적 관련상 수

38)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崔相鎬, 獨逸의 環境責任法과 우리나라의 環境政策基本法의 比較 考察, 民事法學 제16호(1998), 378면 이하 참조.

39) 예외적인 경우는 채권자가 原狀回復 대신 금전배상을 요구하거나(獨民 제249조 2문), 原狀回復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 인정되며(獨民 제251조 (1)), 原狀回復이 과도한 경비의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獨民 제 251조 (2) 2문)에도 금전배상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環境責任法 제5조.40) 이와는 달리 人的 損害에 대해서는 填補賠償의 原則을 취한다. 環境責任法 제12조 이하에 의해 모든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인적침해에 따른 逸失利益과 장례비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原狀回復의 義務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와 결부되는 한—생태계의 침해 (ökologischer Schaden)의 경우에도 연결된다. 環境責任法 제16조는 原狀回復의 義務를 生態界的 侵害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물건의 손상으로 자연이나 조망에 침해를 주는 경우 原狀回復이 물건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原狀回復을 위해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獨民 제251조 (2) 1문에 의하면 原狀回復이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과도한 지출의 한계는 침해된 물건의 가액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原狀回復에 지출되는 비용이 침해된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獨民 제251조 (2)에 따라 금전배상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나 조망등의 생태계적 침해에 있어서는 原狀回復에 지출되는 비용이 침해된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환경침해법 제16조는 이러한 생태계적 침해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原狀回復을 실현하여 이를 위해 적합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41)에는 그 금액이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原狀回復의 義務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물건의 가액을 월등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의 의무를 지우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42) 環境責任法 제16조는 판례

40) 이 규정은 無過失責任의 확대적 적용을 통해 사소한 손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을 지음으로써 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41) 環境責任法 제16조 (2)에 따라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비용을 先給請求할 수 있다.

42) 단 주의할 것은 環境責任法 제16조상 피해자가 환경복원(원상회복)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의 의무가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는 人的 損害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회복을 위

상으로 발전된 이론을 규정화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나 獨逸 水管理法 제22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의 청구시, 그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⁴³⁾

原狀回復義務의 확장에 의해 『환경의 보전과 복원』이라는 환경정책상 매우 중요한 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 성격을 갖는 民事責任의 한계상 原狀回復의 擴張을 당사자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피해자가 환경복원(원상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금전배상만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는 民事責任을 중심으로 하는 環境責任法에 있어서는 생태계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개인의 법익, 특히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손해와 무관한 생태계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결국 環境責任法은 民事責任法의 한계상 ‘생태계의 보호 일반’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過失相計

環境責任法 제11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獨民 제254의 적용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됨으로써 피해자나 그의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발생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告知를 게을리 하였거나, 발생한 손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치료비)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다.

43) Kloefer/Brandner, 前掲書, S. 419.

3) 複數의 原因提供者

원인제공자가 복수인 경우에 관한 규정은 環境責任法에 존재하지 않는다.⁴⁴⁾ 따라서 여러명의 원인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액 전부에 관하여 연대책무를 지는가가 문제된다.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이 결부하여 1개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관해서 환경책임법상으로는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독일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의하면 여러개의 시설중 1개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나, 어느 시설이 문제된 것이지가 불분명한 소위 '選擇的 因果關係 (Alternative Kausalität)'의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각각의 시설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獨民 제830조 (1) 2문의 연대책무가 인정된다.⁴⁵⁾

이에 비해 여러 시설이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1개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重疊的 因果關係 (Kumulative Kausalität)의 경우에는 시설보유자는 자기의 기여도(부담부분)를 확정할 수 있는 한 分割責任을 진다.⁴⁶⁾ 하지만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상의 판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分割責任의 근거가 사라진다. 결국 연대책무의 법리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4) 입법초안에는 분할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獨逸 聯邦參議院(Bundesrat)의 반대로 삭제되었다(BT-Drs. 11/7104, S.28 참조). 따라서 環境責任法은 분할책임을 원칙을 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5) Hager,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NJW 1991, 134 ff.

46) Kloepfer/Brandner, 前掲書, S. 423.

4) 消滅時效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環境責任法 제17조에 따라 불법행위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獨民 제852조가 적용됨으로써 環境責任法 제1조상의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한 가해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5. 填補準備

環境責任法 제19조 (1)은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2)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책임보험에의 가입. 둘째, 연방 또는 주에 의한 책임의 인수나 보증. 셋째, 신용기관에 의한 책임의 인수나 보증. 결국 環境責任法은 시설보유자에게 단지 '잠재적 가해자'라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轉補準備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綜合・比較的 考察

1. 故意・過失의 問題

環境汚染事件에 있어 민사상의 損害賠償의 請求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不法行爲法은 過失責任을 원칙으로 하며,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立證責任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環境汚染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過失을 구체적으로 立證하기가 어렵다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汚染物質을 다루는 기업은 모두가 行政規制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法規의 형식적인 준수를 근거로 과실없음을 유효하

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過失에 대한 立證을 더욱 어렵게 한다.⁴⁷⁾ 그렇다고 해서 過失責任의 原則을 포기한다는 것은 不法行爲法의 原則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正當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각각의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만큼 法的 安定을 기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特別立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環境 오염분야에서— 鑛業法 제91조, 水産業法 제76조, 原子力法 제3조 및 環境政策基本法 제31조 등—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많은 特別立法이 단행되었다. 또한 이 無過失責任을 正當화하는 근거를 공통적으로 危險原에 대한 지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危險責任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단 1개의 조문을 통해 『無過失責任의 原則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다. 無過失責任(危險責任)이 적용된다면, 그것이 다양한 環境汚染의 原因 또는 主體의 그 어느 것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과 無過失責任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해자와 상대적으로 두터운 보호를 보장받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環境政策基本法과 같이 無過失의 危險責任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環境責任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環境責任法에는 無過失責任이 적용되는 主體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깃들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危險責任에 기초하면서도 行爲責任이 아니라 施設責任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施設責任에 의하면서도 될 수 있는 한 抽象性을 배제하기 위하여 列舉主義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행위(오염물질의 방출)에 연결하여 행위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 대상 주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오염물질을 다루는 시설)에 연결하여 시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범위를

47) 尹庸碩, 前掲論文, 72면

제한한다. 입법상 列舉主義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것이지만, 독일민법은 동법 제823조에서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법익을 역시 列舉主義에 입각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列舉主義는 그만큼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잠재적 가해자에게 자기가 이 무거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예견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法的 安定’을 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일단의 결정은 無過失責任이 부과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위해서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의 免責事由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環境政策基本法은 동법 제31조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施設責任이 아니라 行爲責任으로 이해된다.⁴⁸⁾ 다만 그 대상주체가 ‘사업자’에 제한되고 있는데, 잠재적 가해자의 거의 모두가 사업자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 등’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적용범위를 불명하게 하는 커다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가해자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결국 無過失責任이 적용된다는 점만을 밝힐 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의 조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⁴⁹⁾

48) 尹庸碩, 前掲論文, 74면

49) 따라서 環境政策基本法이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신중한 연구의 결과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尹庸碩, 前掲論文, 73면.

2. 因果關係의 問題

無過失의 危險責任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因果關係가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건의 특성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대의 기술·전문지식을 총동원하더라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따른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立證責任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蓋然性說, 新蓋然性說 및 立證責任의 轉換論 등 여러 가지의 이론들⁵⁰⁾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입법적인 근거를 사실상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상의 명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법적 안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過失責任과 無過失責任의 대립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環境責任法은 '因果關係의 推定'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推定規定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엄밀하게는 완화된 형태의 立證規定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因果關係가 推定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대한 立證責任으로부터 전면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시설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유효하게 立證해야만 비로소 추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因果關係에 대한 立證責任을 施設適合性에 대한 立證責任으로—완화시켜—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推定の 效力은 아무런 대가없이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 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環境責任法은 이를 위해 가해자(시설보유자)가 행정규범을 준수하는 소위 정상조업의 경우에는 因果關係推定の 效力

50) 이들 이론의 내용 및 결합에 관해 상세한 것은 尹庸碩, 前揭論文, 63면 이하 참조.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정'이 손해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因果關係推定の 效力을 배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정'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因果關係推定の 效力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과 같은 정도의 요건만이 문제된다. 즉, 가해자(시설보유자)는 '다른 사정'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衡平의 原則).

環境責任法은 한편으로는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因果關係를 推定함으로써 가해자에게 二重的인 負擔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무거운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環境責任法上的 '因果關係의 推定'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제한 없는 立證의 推定이 제안⁵¹⁾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제한은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환경오염의 혐의에만 근거하여 잠재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複合原因에 의한 損害의 問題

둘 이상의 環境汚染의 原因이 공동작용을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環境責任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상 여러 명의 가해자가 連帶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環境政策基本法 제31조 (2)에서도 각 原因提供者가 連帶責任을 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필연적인 것으로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명의 원인제공자들에게 連帶責任을

51) 尹廣碩, 前掲論文, 84면.

지움으로써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구제를 확고히 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과 당사자들간의 이해의 조절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分割責任에 따르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단, 이는 손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⁵²⁾ 하지만 환경오염의 특성상,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위 市場持分責任原則 (Market Share Liability)⁵³⁾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국의 판례(Shindell v. Abott Laboratories Cal., 607 P. 2d. 924)에서 비롯된 이론으로, DES라는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한 임산부가 암 또는 악성종양에 걸린 여아들을 출산하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원고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⁵⁴⁾에도 원고가 복용한 것과 같은 공식에 의해 제조된 DES 시장의 상당한 지분을 점유하는 제조회사를 피고로 했다면, 피고회사가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DES시장에 있어서의 각자의 지분만큼 책임을 저야 한다는 판결을 그 내용으로 한다. 결국 確率 (이는 市場占有率과 비례한다)에 따라서 事實上的 因果關係를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환경오염 일반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각 원인제공자가 제공하는 원인은 서로 그 성질이나 강도를 달리하거나, 시장점유율 등과 같이 확률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52) 결과적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連帶責任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3)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尹鷹頌, 美國不法行爲法上の Market Share Liability에 관하여, 法學研究 제34권(1993), 149면 이하 참조.

54)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여러 제조회사중 어느 회사의 제품을 복용했는 지를 입증할 수 없었다.

55) 위의 미국판례 (註54)에서는 DES제라는 '동일한' 성분과 공식에 의해 제조된 제품에 관한 것이었으며, 확률의 산출기준이 된 시장점유율은 확정가능한 기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情報請求權

環境損害의 原因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汚染物質이 유출되어 환경침해가 있었고, 이 환경침해가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위해 立證責任을 緩和 또는 轉換하는 경우에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피고의 反證이나 主張이 있으면 피해자를 위한 법적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접근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통상 가해자측이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접근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情報請求權을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情報請求權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서 가해자측의 '영업상의 비밀의 유지'라는 다른 보호법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

環境責任法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시설보유자)에게도 관련 관청이나 다른 시설보유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의 조절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994년 부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情報法(Umweltinformationsgesetz)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民事責任을 규율하는 環境責任法에서 公法의 性格을 갖는 '官廳에 대한 情報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公法人 環境情報法에 의한 情報의 公開가 民事責任上의 要件의 충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극복을 위해 公法과 私法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6) 尹庸碩, 環境汚染의 民事責任에 관한 새로운 動向, 財産法研究 제11권(1994) 1호, 76면.

IV. 結語

環境汚染의 問題를 극복하기 위한 독일의 法律的 對應方案을 비교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적어도 民事責任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環境책임법과 같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기서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주요내용이 되어야 하겠으나, 피해자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無過失責任과 因果關係의 單純한 推定에만 의존하여 새로운 책임영역이 창설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⁵⁷⁾ 그렇게 되면 環境오염의 '혐의'만을 가지고도 책임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獨逸 環境責任法에서와 같이 가해자의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環境문제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독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公法과 私法의 公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접적인 행정규제의 수단을 통하건, 개별적 보호법익에 대한 배상이라는 수단을 통하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環境權의 保障'이라는 基本權의 目標이기 때문이다.

57) 環境책임법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제의 시설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함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한적인 추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